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46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0.

발 의 자: 안호영·김주영·박정현

복기왕 • 윤준병 • 신영대

박홍배 · 이학영 · 박희승

어기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고, 해당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며, 근로자의 내일채움 공제 납입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서는 그 기여금에 대한 근로자 부담 소득세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90을 감면하고 있으나, 2024년 12월 31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.

그러나 경영성과급 지급 및 내일채움공제 가입 장려를 통한 노동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경영성과급 및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제1항 및 제29조의6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본문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29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29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29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9조(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 제19조(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 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) 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) ①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 법」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(이하 이 조에서 "성 과공유 중소기업"이라 한다)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 자(이하 이 조에서 "상시근로 자"라 한다)에게 2024년 12월 -----2029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1일-----경영성과급(이하 이 조에서 "경영성과급"이라 한다)을 지급 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 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 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 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 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 제하지 아니한다.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 (2) ----

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 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 는 세액을 감면한다.

- 1. 2. (생략)
- ③ ④ (생 략)

제29조의6(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 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) ①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 법」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 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 과보상기금(이하 이 조에서 "성과보상기금"이라 한다)의 공 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 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 기업의 근로자(해당 기업의 최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람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핵심인력"이라 한다)가 공제납입금을 5년(중소기업 또 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

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

2029년 12월
<u>2023 년 12 월</u> 31일
<u> </u>
1.·2. (현행과 같음)
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29조의6(중소기업 청년근로자
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
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)
①
<u>2029년 12월 31일</u>

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 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 여 5년) 이상 납입하고 그 성 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 금(이하 이 조에서 "기여금"이 라 한다) 부분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, 소득세에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하다.

- 1. 2. (생략)
- ② · ③ (생 략)

1. • 2. (현행과 같음)				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